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제43호
----------	------------

제출연월일 2007. 6. 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학교급식대상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던 학교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개정됨에 따라 급식대상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기준 47,324천원정도 증액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7. 5. 2 ~ 2007. 5. 2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를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u>학교급식법 시행규칙</u>」 제2조에 명시된 <u>초·중·고등학교</u>로 한다.</p>	<p>제3조(지원대상) ----- ----- <u>초·중·고등학교</u> 및 유치원, 그 밖에 <u>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u>로 한다.</p>

관계법령 발췌

【학교 급식법】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 「학교급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는 급식 개시 전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급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식실시현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공 · 사립유치원 원아 현황

(2006.10.1.현재)

구분	설립	학급수		원 아 수											
				남				여				계			
		인가	편성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계
삼천포	공립	1	1		2	6	8		2	3	5		4	9	13
문선	공립	2	2		3	17	20		5	9	14		8	26	34
노산	공립	1	1		2	4	6			9	9		2	13	15
대방	공립	1	1	1			1	1	2	2	5	2	2	2	6
용산	공립	2	2		1	19	20		2	14	16		3	33	36
남양	공립	1	1			6	6		1	2	3		1	8	9
대성	공립	1	1		1	3	4		1	3	4		2	6	8
신수도	공립	1	1		1	1	2					1	1		2
동성	공립	2	2			31	31			23	23			54	54
정동	공립	1	1			14	14	1	3	8	12	1	3	22	26
축동	공립	1	1	1	2	5	8	1		2	3	2	2	7	11
곤양	공립	2	2	1	4	8	13	2	4	5	11	3	8	13	24
곤명	공립	1	1		2	4	6	1	3	2	6	1	3	6	10
완사	공립	1	1		1	3	4	1	2	5	8	1	3	8	12
서포	공립	1	1	3	3	2	8		3	3	6	3	6	5	14
사천	공립	5	5		22	48	70		29	36	65		51	84	135
계	16	24	24	6	44	171	221	7	57	126	190	14	99	296	409
성광	사립	3	3	1	8	10	19	4	4	5	13	5	12	15	32
새싹	사립	3	3		23	28	51		20	28	48		43	54	97
꽃나라	사립	4	4	15	14	36	65	10	14	33	122	25	28	69	122
상아	사립	2	2	2	13	23	38	4	28	6	39	6	41	29	76
성균관	사립	5	5	13	31	45	89	7	29	27	63	20	60	72	152
한마음	사립	4	4	3	27	33	63	3	18	25	46	6	45	58	109
삼성	사립	2	1	4	2		6	5	2	2	9	9	4	2	15
리라	사립	7	7	30	32	30	92	26	20	32	78	56	52	62	170
열린	사립	4	4	17	15	15	46	10	13	12	35	27	28	26	81
수정 자연	사립	3	3	11	13	17	41	13	12	11	36	24	25	28	77
색동	사립	5	3	12	11	11	34	12	14	19	45	24	25	30	79
계	11	42	39	108	189	248	544	94	174	200	534	202	363	445	1,010
합계	27	66	63	114	233	419	765	101	231	326	724	216	462	741	1,419

* 유치원 구분 - 공립유치원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천은 사천유치원으로
 단설임.사립유치원 : 단설사립유치원